

# 레이카운티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502-1361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부산광역시 거주자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0.10.08.)부터 6개월<br>(현재 전매 가능) | 없음     | 미적용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일반공급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 5. 22.(금) | 2026. 6. 1.(월) | 2026. 6. 8.(월) | 2026. 6. 11.(목) ~ 2026. 6. 12.(금) | 2026. 6. 16.(화) |

1

## 공통 유의사항

###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자 완료된 단지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 주변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재공급 세대이며, 준공 이후 현재 상태로 분양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체결 대상자에 한하여 동호 개방 예정)
-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기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및 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9.14.)을 준용하오니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www.geoje2.co.kr/>) 등을 통해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         |           | X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

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www.geoje2.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정보취약계층 등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 5. 2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17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4.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913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일반공급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b>2026. 6. 1.(월)</b>                                                                              | <b>2026. 6. 8.(월)</b>                                            | <b>2026. 6. 11.(목) ~ 2026. 6. 12.(금)</b><br>(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b>2026. 6. 16.(화)</b><br>(10:00~15:00)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분양사무실<br/>(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1번길 8, 2층(거제동))</li> </ul>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당첨자 발표일(2020.10.0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전매제한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행자는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 24250호(2026. 5. 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안드대로 39 레이카운티(연제구 거제동 8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레이카운티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9~25층 34개동 총 4,47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본 아파트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서 잔금을 완납 한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 주택<br>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비분 | 총공급<br>세대수 | 일반공급<br>세대수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
| 2026930017 | 01  | 084.8261A       | 84A  | 84.8261                 | 28.9065    | 113.7326 | 50.9717                | 164.7043 | 43.7279     | 2          | 2           |
|            | 02  | 084.9823B       | 84B  | 84.9823                 | 30.4320    | 115.4143 | 51.0655                | 166.4798 | 44.3744     | 1          | 1           |
|            | 합 계 |                 |      |                         |            |          |                        |          |             | 3          | 3           |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 약식표기 | 동 호      | 아파트 총 공급가액  |             |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대지가격        | 건물가액        | 아파트 분양가(A)  | 추가 부대경비(B) | 계(A+B)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84A  | 108-403  | 174,831,700 | 468,168,300 | 643,000,000 | 19,000,000 | 662,000,000 | 66,200,000 | 595,800,000 |
| 84B  | 304-603  | 157,430,100 | 421,569,900 | 579,000,000 | 19,000,000 | 598,000,000 | 59,800,000 | 538,200,000 |
| 84A  | 307-1304 | 158,517,700 | 424,482,300 | 583,000,000 | 19,000,000 | 602,000,000 | 60,200,000 | 541,8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존에 제작 및 배포된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등 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되어 아파트 공급금액 외에도 기 시공된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가전, 공간/가구 유상옵션) 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블출일 또는 입주중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입주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금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입주시기(잔금 납부일)와 관계없이 재산세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미부담시 입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내역,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동 호      | 품목            |                                 | 내용                                     |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84A  | 108-403  | 확장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전체실 확장[침실1(안방)제외]+유리난간+일반 슬라이딩 창호  | 18,700,000 | 1,870,000 | 16,830,000 |
|      |          | 가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br>*공기 청정기능 제외 | 거실+침실1+침실2+침실3(4개소)                    | 7,830,000  | 885,000   | 7,965,000  |
|      |          |               | 식기세척기                           | DW60T7065SS/삼성전자(12인용)                 | 110,000    |           |            |
|      |          |               | 3구 인덕션                          | NZ63T6707MR/삼성전자(인덕션3)                 | 910,000    |           |            |
|      |          | 합계            |                                 |                                        | 27,550,000 | 2,755,000 | 24,795,000 |
| 84B  | 304-603  | 확장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전체실 확장[침실1(안방)제외]+유리난간+일반 슬라이딩 창호  | 20,900,000 | 2,873,000 | 25,857,000 |
|      |          | 가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br>*공기 청정기능 제외 | 거실+침실1+침실2+침실3(4개소)                    | 7,830,000  |           |            |
|      |          | 합계            |                                 |                                        | 28,730,000 |           |            |
| 84A  | 307-1304 | 확장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전체실 확장[침실1(안방)제외]+유리난간+시스템 슬라이딩 창호 | 21,310,000 | 3,891,000 | 35,019,000 |
|      |          | 가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br>*공기 청정기능 제외 | 거실+침실1+침실2+침실3(4개소)                    | 7,830,000  |           |            |
|      |          |               | 식기세척기                           | DW60T7065SS/삼성전자(12인용)                 | 110,000    |           |            |
|      |          |               | 3구 인덕션                          | NZ63T6707MR/삼성전자(인덕션3)                 | 910,000    |           |            |
|      |          | 공간<br>/<br>가구 | 안방 슬라이딩 확장형 패키지                 |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확장형)+시스템가구(확장형)+화장대 방     | 5,240,000  |           |            |
|      |          |               | 미드웨이장                           | 와이드형 식기 건조 선반+주방고리                     | 220,000    |           |            |
|      |          |               | 현관중문                            | 알루미늄 3연동 슬라이딩 중문                       | 1,780,000  |           |            |
|      |          |               | 현관 고급화(복도장)                     | 청소기장(다용도 선반 및 바구니 설치)                  | 1,160,000  |           |            |
|      |          |               | 주방 후드 상부 수납장 확장                 | 후드 상부 수납장 확장                           | 350,000    |           |            |
|      |          | 합계            |                                 |                                        | 38,910,000 |           |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공급금액(분양대금) |                        | 우체국  | 600189-05-001248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108-403    | 발코니 확장                 | 우리은행 | 2848-296691-8507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            | 가전(시스템에어컨, 식기세척기, 인덕션) | 우리은행 | 2848-298041-8500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 304-603    | 발코니 확장, 가전(시스템에어컨)     | 하나은행 | 249-890000-93201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 307-1304   | 발코니확장, 가전, 공간 / 가구     | 하나은행 | 249-890000-93201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충분히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기 항목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108동 403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 '108403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어 주택형별, 타입별로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해당 세대 계좌와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90%는 실입주일 또는 키볼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b>4</b> | <b>일반공급</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div> <div>■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b>부산광역시</b>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div> <div>※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div> <div>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div> <div>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div> </div> |
| 당첨자 선정방법 | <div>■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div>                                                                                                                                                                                                         |

|          |                         |
|----------|-------------------------|
| <b>5</b> | <b>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b> |
|----------|-------------------------|

|                                                                                                                                                                                                                                                                                                                                                                                                                                                                                                                                                                                                                                                                          |                                                                                                                                                                                                                                                                                                                 |                                                                                                                                                                                                                                                                                                                                                                                                 |
|--------------------------------------------------------------------------------------------------------------------------------------------------------------------------------------------------------------------------------------------------------------------------------------------------------------------------------------------------------------------------------------------------------------------------------------------------------------------------------------------------------------------------------------------------------------------------------------------------------------------------------------------------------------------------|-----------------------------------------------------------------------------------------------------------------------------------------------------------------------------------------------------------------------------------------------------------------------------------------------------------------|-------------------------------------------------------------------------------------------------------------------------------------------------------------------------------------------------------------------------------------------------------------------------------------------------------------------------------------------------------------------------------------------------|
| <div> <div>■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div> <div> <div>-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div> <div>-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div> <div>*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div> <div> <div>-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div> <div>-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div> <div>*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div> </div> |                                                                                                                                                                                                                                                                                                                 |                                                                                                                                                                                                                                                                                                                                                                                                 |
| 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                                                                                                                                                                                                                                                                                                                                                                                                                                                                                                                                                                                                                                                | <div> <div>-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div> <div>-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div> <div>-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div> </div> |                                                                                                                                                                                                                                                                                                                                                                                                 |
| 당첨자발표<br>서비스                                                                                                                                                                                                                                                                                                                                                                                                                                                                                                                                                                                                                                                             | 청약홈                                                                                                                                                                                                                                                                                                             | <div> <div>-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div> <div>- <b>조회기간</b> : 2026.06.08.(월) ~ 2026.06.17.(수) (10일간)</div> <div>-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div> </div>                                                                                                                                                                                                 |
|                                                                                                                                                                                                                                                                                                                                                                                                                                                                                                                                                                                                                                                                          | 문자                                                                                                                                                                                                                                                                                                              | <div> <div>- <b>제공일시</b> : 2026.06.0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div> <div>-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div> <div>*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및 계약체결 안내

|                |                                                                                                                                                                                                                          |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자 | <b>■ 서류제출 : 2026. 6. 11.(목) ~ 2026. 6. 12.(금), 계약체결 : 2026. 6. 16.(화)</b><br><b>※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일정 추후 통보)</b>                                                                                              |
| 서류제출처          | <b>■ 분양사무실[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1번길 8, 2층(거제동)]</b>                                                                                                                                                                           |
| 유의사항           | <b>■ 추후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b><br><b>■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b><br><b>■ 모든 증명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 |

### ■ 공통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2026.06.11.~2026.06.12.) 및 계약체결일(2026.06.16.)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일반<br>공급<br>및<br>공통<br>서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                           |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br>※ 20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br>(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br>※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레이카운티'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br>"전체 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br>"전체 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br>발급<br>※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br>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br>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br>세대원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br>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b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br>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br>※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오피스 한당 스위첸'으로<br>설정하여 발급)                                                                                                                                            |
|                           | ○    |             | 인감도장                          |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                           | ○    |             | 위임장                           |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 비치)                                                                                                                                                                                                                                                                             |
|                           | ○    |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br>필수)<br>※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
|------|--------------------------------------------------------------------------------------------------------------------|-------------------------------------------------------------------------------------------------------------------------------------------------------------------|
| 일반공급 | ※ 일시 : 2026. 6. 8.(월)<br>※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서류제출 : 2026. 6. 11.(목) ~ 2026. 6. 12.(금)<br>계약체결 : 2026. 6. 16.(화)<br>(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br>※ 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1번길 8, 2층(거제동)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임.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계약 현황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하단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 재당첨제한 적용)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6.06.17.(수)~2026.08.18.(월)까지(60일간)

■ 계약체결 구비서류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구비서류                   | 서류유형 |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본인<br>계약시                       | 신분증                    | ○    |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용<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인감도장                   | ○    |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입금증       | ○    |             | -    | • 분양사무실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             |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시 신고의무                                                    |
|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br>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
|                                 | 위임장                    |      | ○           |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     |      |           |                  |        |         |     |           |      |        |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     |      |           |                  |        |         |     |           |      |        |     |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        |     |      |           |                  |        |         |     |           |      |        |     |     |              |
| 주택처분<br>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주택을<br>소유하지<br>않은 것으로<br>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br>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br>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br>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br>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        |     |      |           |                  |        |         |     |           |      |        |     |     |              |
|                                                                                             |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        |         |     |           |      |        |     |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                  |        |         |     |           |      |        |     |     |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                  |        |         |     |           |      |        |     |     |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           |                  |        |         |     |           |      |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참고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2020.09.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청약제한사항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9.14.)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내용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이므로 보증기간이 종료되었음 | 1,119,548,500,000원 | 제01282020-101-0007000호 |

##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69g 임(VII-0.169g)

##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
|------------|--------------------------------|
| 건축물명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단지           |
| 건축주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준공연도       | 2022년 9월                       |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br>거제2동 3255-44번지 일원 |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35층 / 1360세대         |
| 연 면 적      | 202,520.63㎡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비엔티 설계건축사사무소                  |

## [인증 개요]

|      |                     |
|------|---------------------|
| 인증번호 | 제2019-1-1967호       |
|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유효기간 | 2019.01.10. ~ 사용승인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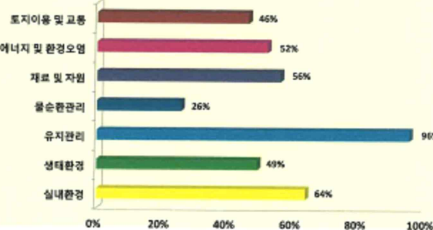
## [인증 등급]

|      |                    |
|------|--------------------|
| 인증등급 | 일반등급(공동주택)         |
|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
|      | 환경부고시 제2016-111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분야별 평가]

## 중합등급 ☆☆☆



2019년 01월 1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2018년 12월 10일



## 3단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건축물 개요                               | 인증개요                    |
|--------------------------------------|-------------------------|
| 건축물명 :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3단지             | 인증번호 : 18-주-에-1-1271    |
| 준공연도 : 2021년 06월 30일                 | 평가자 : 김정호               |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117번길 65일원 (거제동) |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층 수 : 지하2층 / 지상34층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연 면 적 : 179517.1716㎡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
| 설계자 : (주)용한건축사사무소 권한                 |                         |
|                                      | 인증등급 : 1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 요구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 배출량  |
|-----------------------|------|-------------------------|------|-----------------------------------|------|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에너지지수상대 건축성적                      | 7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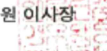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29.4                  | 56.8                  | 44.8                    | 11.9                              |
| 급탕 | 30.7                  | 35.2                  | 26.2                    | 7.2                               |
| 조명 | 18.3                  | 18.3                  | 50.3                    | 8.6                               |
| 환기 | 78.7                  | 3.9                   | 10.6                    | 1.6                               |
| 합계 | 78.4                  | 114.2                 | 131.9                   | 29.7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됨 [✓] 설치되지 않음 [ ]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한국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1단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6. 7. 27.&gt;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단지  
 2. 신 청 자: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255-44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3. 토공사 질서통합 최소화           | 해당없음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성물질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P)의 사용     | ★★   |
| 11. 자발적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폐기물 및 자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해당없음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17. 빗물 및 우수저장수 이용         | 해당없음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비오름 조성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와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14. 발발안전 콘텐츠              | ★★   |

## 나.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도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1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3단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6. 7. 27.&gt;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단지  
 2. 신 청 자: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802-7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3. 토공사 질서통합 최소화           | 해당없음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성물질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P)의 사용     | ★★   |
| 11. 자발적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폐기물 및 자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해당없음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17. 빗물 및 우수저장수 이용         | 해당없음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비오름 조성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와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14. 발발안전 콘텐츠              | ★★   |

## 나.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도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1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배정지 120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구획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2.3M       | 2.1M     | 2.3M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
| 상호명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삼성물산(주) DL이앤씨(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1번길 8, 2층(거제동) | 삼성물산(주) :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26<br>DL이앤씨(주)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5 원그로브 A동<br>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 법인등록번호 | 180171-0008048                 | 삼성물산(주) : 110111-0015762<br>DL이앤씨(주) : 110111-0084915<br>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110111-6740008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
| 회사명  |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 대화        | (주) 한국코아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13,712,862,900     | 1,741,970,000 | 1,436,600,000 |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81번길 8, 2층(거제동)

■ 분양 문의 : **051-502-1361** (평일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